

광주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1가단114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지훈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영

변 론 종 결 2023. 1. 27.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경위

1) 피고 C와 소외 D는 2013. 8. 26. 원고 재단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광주 서구 E 답 2,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2) 원고 재단의 2014. 7. 1.자 발기인 총회에서 ‘피고 B를 원고 재단 이사장으로, D를 상임이사로 각 선출하고, 피고 C와 D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기본재산으로 기부출연하며, D는 5억 원을 보통재산으로 기부출연한다’는 내용으로 의결되었다.

3) 원고 재단은, 2014. 8. 5.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피고 C와 D의 공유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8. 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8. 2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이 사건 토지의 지상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지상건물에 F 요양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공정증서 작성 및 합의서 작성 경위

1) D는 남편 G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4. 10. 13. 피고 C와 사이에 ‘D는 피고 C에게 차용한 6억 원을 2015. 2. 28.까지 7회에 걸쳐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작성 증서 2014년 제886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고 C와 D는 2014. 10.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① D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과 같이 6억 원을 지급한다.

② D는 피고 B를 비상근상임이사로 6년간의 임기를 보장하며 급여는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한다.

③ 피고들은 원고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권리를 포기하고, 경영권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책임과 의무도 일체 지지 않는다.

④ 원고 재단의 법인 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 양도세 및 각종 세금, 병원신축에 따른 모든 부채 및 비용은 모두 D가 책임진다. I조합에 발생한 채무 17억 원을 원고 재단으로 전환하고, 이자는 D가 지급한다.

3) 위 합의에 따라 2014. 11. 17. 원고 재단의 대표이사가 피고 B에서 D로 변경되었다.

다. 채무의 일부 변제 및 지급약정서 작성 경위

1) D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2014. 10. 25. 15,000,000원, 2014. 10. 28. 34,430,000원, 2014. 12. 8. 50,000,000원, 2014. 5. 14. 31,188,454원을, 원고 재단은 2014. 10. 30. 55,000,000원, 2015. 1. 27. 20,000,000원을 각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2) D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 C은 2015. 3. 19. D의 원고 재단에 대한 급여채권 등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4682호로 압류·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3) 원고 재단의 2015. 4. 22. 이사회에서, D가 원고 재단 대표직에서 사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로 J가 선출되었다.

4) 피고들과 D는 2015. 9.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약정서(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지급 약정서	
약정인 :	D
피약정인 :	피고들
약정인의 연대보증인 :	원고 재단 이사장 J
약정금 표시 :	금400,000,000원

약정인, 피약정인,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사항에 합의한다.

1. 약정인 D는 원고 재단의 연대 입보하에 사역원(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2. 약정인 D와 연대보증인 원고 재단은 피고 C와 D가 건축주로서 K에 대하여 부담하는 피고 C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D와 원고 재단은 피약정인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약정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건물의 양도 행위로 피약정인에게 발생한 세금 155,100,000 원을(예상)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D와 원고 재단은 피약정인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위 세금은 예측 금액이기에 실질 발생 세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위 제1항과 제2항의 약정이행을 마치면 피약정인은 다음 각 사항을 이행한다.
 5. 위 제1항의 금원은 연대보증인 원고 재단에 대하여 담보대출금이 실행되는 즉시 기채승인 후 대출실행일 당일 지급하기로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D는 연대보증인 원고 재단과 함께 본 약정서상의 모든 채무를 인수한다.
- 아 래 -
- ① 공증인가 H2014제1686호, 2014년1639호, 2014년1685호등에 상호간에 작성한 모든 공정증서의 효력은 반환금의 지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 ② 광주지방법원 L 강제경매신청 사건을 취하한다.
 - ③ 광주서부경찰서로부터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전부 취하한다.
 - ④ 추후 원고 재단 및 D에 관련하여 민사, 형사, 행정상 그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⑤ 피약정인 피고 B은 원고 재단의 이사로서 원고 재단에 사임계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한다.
- (※ 위와 같은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위 반환금 약정은 무효이며 본 증서는 차용증의 효력을 갖는다.)
- 5) 이 사건 지급약정서와 관련하여, D의 2015. 9. 10.자 인감증명서와 원고 재단의 2015. 9. 17.자 법인인감증명서가 피고들에게 교부되었다.

라. 채무의 일부 변제 및 각서 작성 경위

- 1) 원고 재단은 2015. 9. 30. M 주식회사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은행에 이 사건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2) D는 2015. 10. 5.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급약정서에 따른 4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원고 재단 명의로 ‘원고 재단이 2017. 10. 30.까지 피고 B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위 완납일까지 매월 30일에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들은 D에게 ‘상호간에 작성한 모든 공정증서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관련 강제경매신청 및 고소·고발사건을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관련 민사사건 진행 경과

- 1) 피고 B는 2017. 7. 11. 원고 재단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서에 따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21. 피고 B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8. 3. 21. 선고 2017가단17615 판결). 이에 원고 재단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1. 23. ‘D가 2015. 4. 22. 원고 재단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는 대표권 없는 D에 의한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다’라는 사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나53770 판결). 이에 불복하여 피고 B이 상고하였으나 2019. 5. 3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 5. 30.자 2019다209222 판결).
- 2) 이후 피고들은 2019. 9. 4. 원고 재단 및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지급약정서에 따른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30. 피고들 전부 승소판결(무변론)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가단530976 판결). 이에 원고 재단 및 D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1. 1. 21. D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되, 원고 재단의 항소에 관하여는 ‘원고 재단이 D에게 이 사건

지급약정서상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 또는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재단이 D가 임의로 원고 재단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사유로 제1심판결 중 원고 재단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원고 재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나65855 판결,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재단의 주장

이 사건 지급약정서는 D의 무권대표 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지급약정서에 기하여 2015. 10. 5. 피고 C에게 지급된 2억 원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재단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2억 원 중 일부금인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이 사건 지급약정서 중 원고 재단에 관한 부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지급약정서 중 D에 관한 부분은 효력이 인정된 점, 2015. 10. 5. 피고 C에게 지급된 2억 원은 원고 재단이 아닌 D가 이 사건 지급약정서에 기하여 지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재단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D가 2015. 10. 5. 피고 C에게 지급한 2억 원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D가 위 2억 원을 원고 재단의 재산을 이용하여 조달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D와 원고 재단 사이에서 정리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 재단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재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화